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서

제출연월일 : 2024. 7.

제 출 자 : 대 통 령

재의요구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7월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별지에 기재된 이유로 그 내용대로 공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려는 것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서

2024년 7월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 특별검사 법률안”이라 함)에 대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 유

정부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과 특별검사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위반되고,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담보가 어려우며, 인권침해 우려 등 위헌성이 있어 2024년 5월 21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였고, 같은 법안은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제21대 국회에 재의 요구 당시 위헌 사유로 지적된 사항들이 전혀 수정되거나 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특별검사의 임명을 간주하는 규정’, ‘특별검사에게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 ‘특별검사 준비 기간 중에도 수사를 가능하

게 하는 규정' 등이 추가되어 위헌성이 가중된 형태로 의결되었습니다.

이 특별검사 법률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국회 내 심도 있는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률안으로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과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합니다.

-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로써 이를 도입함에 있어서 권력분립원칙상의 헌법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 이러한 행정부 조직과 관련된 예외성 때문에 우리 헌정사에서 특별검사 제도는 항상 국회 내 심도 있는 숙의 절차 내지는 행정부와 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도입되어 왔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민주주의 원리를 존중한 헌법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국회법」에 명시된 제정법률안에 대한 20일간의 숙려기간조차 준수하지 않은 채 법안 발의일로부터 불과 35일만에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되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민주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다수결의 원칙은 의사형성과정

에서 소수파에게 토론에 참가하여 다수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다수의 의사로 결정한다는 데 그 정당성의 근거가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관련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¹⁾에서, ““위원회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한 국회법 제54조의 규정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국회의 의사에 있어 의사정족수, 의결에 있어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에게 출석의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의 충족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또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관련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²⁾에서는 “국회가 회의체에서 심의와 표결을 거쳐 다수결로 국회의 입법권을 행사하면 그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와 기준이 되고, 국민의 법적 지위를 직접 규율하게 되는 점에서, 국회의 입법과정에는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참여, 토론, 숙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1) 헌법재판소 2010. 12. 28.자 2008헌라7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5. 27.자 2019헌라3, 헌라2(병합) 결정

있도록 합리적인 심의 과정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다수결의 원칙은 전원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수의 의결 즉, 집단지성이 보다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다수결은 늘 다수 의견의 오류 가능성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즉, 법률이 정하는 속의 기간을 준수하고, 소수의견을 존중하며, 대화·합의·타협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노력 없이 ‘법대로’를 주장하며 다수결로 밀어붙이게 되면, 다수결 제도가 가지는 약점 즉, ‘중우정치’와 ‘정치적 악용’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닌 형식적 법치주의 내지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 이어져 결국 ‘다수의 폭정’과 ‘다수에 의한 독재’가 횡행할 우려가 큼니다.
-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소수파에게 출석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다수파만으로 단독 처리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에 의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그런데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국회법」에 규정된 속의 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하고, 여당과 충분한 협의나 토론 없이 일방적인 입법청문회 과정만을 거친 후 수적 우위만으로 통과되었는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위헌적 법률안

입니다.

- 아울러,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위와 같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통한 의사 합일 과정이 형해화된 상태로 의결된 법률안으로서, 거대 야당이 일방적인 결론을 내놓고 법률안 통과를 추진한 것을 보면, 다수당의 정파성이 법률에 그대로 반영된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2.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둬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 헌법상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권을 담당하며 국정을 운영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고, 따라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구는 행정부의 소속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행정권의 담당자인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입니다.
-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로써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권력분립원칙상의 헌법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 특히,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³⁾ 따라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⁴⁾

- 헌법재판소도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함)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⁵⁾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의 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 또한, 예를 들어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에 ‘법무부장관’,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포함시키면서,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은 2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3) 미국의 경우 헌법상 의회가 연방 공직을 ‘창설’하고, 대통령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 주요공무원(Primary officer)을 ‘임명’하며, 하위공무원(Inferior officer) 임명의 경우에는 상원의 인준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미국 헌법 제2조 제2항 2절). 이와 같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미국 헌법 규정은, ‘공무원 임명권은 그 권한의 성질상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고, 만약 의회에 임명권을 부여할 경우 의원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무원 임명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헌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된 것입니다.

4) 참고로,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Independent Counsel) 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관여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위 법률이 폐지된 이후 법무부 규칙에 따른 특별검사(Special Counsel) 제도 역시 특별검사 개시 여부 및 후보자 임명·해임 권한이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5) 헌법재판소 2021. 1. 28. 2020헌마264, 681(병합) 결정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등 여러 관련 기관들을 통하여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국회 내 여당과 야당 간에 충분한 토론과 논의 절차 없이 특별검사의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여 특정 정당의 의도에 부합하는 후보자만 특별검사로 선정되는 구조로 만들어진 법률안으로, 사실상 야당이 특별검사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게 되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형해화하는바,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 한편, 역대 특별검사 법률안 중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3건의 법률안⁶⁾의 경우, 여당과 야당의 충분한 대화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이 없는 정당에서도 최종적으로 해당 특별검사 법률안에 합의하여 특별검사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⁷⁾에서 당시 여당(새누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한 규정에

6) 「이명박 정부의 내국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7) 헌법재판소 2019. 2. 28. 2017헌바196 결정

대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 모두 법률안 발의에서부터 표결까지의 입법과정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법률이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되어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절차를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여 입법과정에서의 여야 합의를 중요한 요소로 들고 있습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에서 “두 야당은 변호사 중에서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특별검사를 직접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서 임명에 있어서의 최종적 결정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판시하였습니다.⁸⁾

- 그런데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습니다.

8) 참고로 미국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상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지명 후 상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Process of Appointment for Principal Officers | Constitution Annotated | Congress.gov | Library of Congress 참조)

- 이와 같이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국회 내의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통한 의사 합일 과정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단독 행사하여 사실상 야당이 특별검사를 정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둬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실질을 침해하여, 그동안의 특별검사 제도에 관한 헌법적 관행마저도 무너뜨리고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3.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공수처에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 현행 사법시스템의 기본원칙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의 당사자인 고소·고발인이 수사·재판을 할 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 특별검사 법률안에 따르면 특별검사 후보자 2명 모두에 대한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에만 부여되어 있고, 수사 대상 중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사건(제2조제2호)은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9월, 조국혁신당이 2024년 6월 각각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며,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사건(제2조제4호)과 이와 관련된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사건(제2조제5호)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2024년 3월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바,

- 이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할 경우 고발인이 수사할 기관을 선택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도 고발인이 직접 정하는 것으로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법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절차로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절차와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 특별검사 법률안과 같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여당과 야당의 합의 없이 야당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정치편향적인 인사가

특별검사로 추천되어 임명되는 경우, 실제 진실의 발견보다는 특정 정당의 의도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등 직무수행 전반에 걸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합니다.

- 한편,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헌정사에 그 전례가 없이 비교섭단체에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는데,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6개 비교섭단체들은 모두 여당과 협의 없이 이 법률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정당들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조국혁신당은 이 특별검사 법률안의 수사대상과 동일한 사건을 이미 공수처에 고발한 정당입니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특별검사 추천 및 임명 절차의 공정성, 객관성을 더욱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4.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 특별검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제적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등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그런데 이 특별검사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제2조제1호)은 경찰이 최근 1차 수사를 마쳐 검찰의 추가 수사가 예정되어 있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사건(제2조제2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사건(제2조제4호) 및 이와 관련된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사건(제2조제5호)은 공수처가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 중이며 공수처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 수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습니다.⁹⁾
-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까지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독립적인 권력형 비리 수사 기구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9) 참고로,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Independent Counsel) 법률 역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쪽은 정부와 여당이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 등이다”라고 주장¹⁰⁾하면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이에 관한 반성적 고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히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라는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5. 특별검사에게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현행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수사 대상 관련하여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특별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라 함은 특별검사의 수사와 기소 이전에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을 의미하므로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공소취소를 의미하

10) 2019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브리핑[(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 여야 4당 합의를 환영한다], 2019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브리핑[(‘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제2의 김학의·장자연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치에 반드시 필요하다 외 1건]

는 것이라면 공소유지 권한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이러한 규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수사대상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후 그 공소유지를 하면서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한다는 것은 특별검사의 공소제기와 충돌되는 사건의 공소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검사 또는 군검사의 공소권은 행정권의 일부로서 정부의 권한이며, 공소권 행사는 정부의 기관으로서 공소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그 법적 효과는 정부에 귀속되어 정부의 공소권 행사가 됩니다.
- 법적 효과 귀속의 근거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 내에서 장관을 통해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미치는 지휘감독체계입니다.¹¹⁾
- 현행 헌법상 삼권분립 하에서 정부의 행정권 행사의 취소는 정부 스스로 지휘체계 내에서 행하거나, 쟁송절차에서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행정소송에서의 무효확인, 취소판결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정부 스스로 행정권 행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권을 행사한 기관이 하거나 그 지휘감독권한을 가진 기관만이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공소취소의 경우도 공소제기를 한 검사·군검사 및 그 지휘감독권 체계에 따라 공소취소권을 가진 자만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11) 법정에서 공소를 담당하는 검사 또는 군검사는 정부의 대리인의 지위로 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지휘감독체계 내에 있습니다.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정부 스스로 공소취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유죄, 무죄 여부를 사법부에서 재판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특별검사는 행정권의 일부인 수사·공소권을 행사하므로 행정권의 담당자이고, 입법부와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광의의 정부에 속하는 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점(제5조)에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지휘감독체계 내에 있지 않는 제3의 기관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제3의 기관인 특별검사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지휘감독 체계로 조직화되어 있는 정부의 행정권 행사인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권 침해로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 특별검사는 특별히 부여된 사건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면 되고,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과 검사·군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모두 법원에서 판결로 그 옳고 그름을 판단받으면 될 것입니다.
- 특별검사의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특별검사가 일방적으로 정부의 공소를 불법으로 판단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기회를 박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특히,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취소 후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만 재기소가 가능하므로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로 선고되는 경우 검

사·군검사가 기소한 판단이 정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기소할 수 없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특별검사의 공소취소권은 특별검사에게 행정권의 담당자로서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지휘감독체계 내에 있는 정부의 의사결정을 취소하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공수처도 스스로의 권한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할 뿐 관련한 사건으로서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권한이 없는 바, 대통령의 지휘감독체계에서 벗어난 제3의 기관인 공수처가 대통령의 지휘감독체계 내에서 정부의 권한 행사로 귀속되는 검사 또는 군검사의 공소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권 침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6. 실시간 언론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의사실이 공개됨으로 인해 수사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특별검사 제도가 정략적 차원에서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 이 특별검사 법률안에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실시간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의사실이 공개됨으로 인해, 수사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도 현저합니다.
- 더욱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후보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수사 기간 내내 수사 상황과 내용을 유출하는 등 특별검사 활동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7. 수사 인력과 기간이 과도하여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되어 부적절합니다.

- 특별검사 제도는 통상의 수사절차와 다른 보충적·예외적인 특별절차로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안에 한정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수사 인력과 기간을 제한해왔습니다.
- 그러나 이 특별검사 법률안에 따르면 특별검사 실시기간이 최장 150일로서 역대 특별검사 실시기간 중 최장기간에 해당하고, 역대 특별검사 법률들과 달리 20일의 준비 기간 중에도 수사를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특별검사 실시기간(150일) 내내 수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당합니다.

- 한편, 특별검사는 수사 기간(7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 없이도 30일 더 연장하여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데 (제9조제3항), 이는 사실상 야당이 임명한 특별검사로 하여금 대통령의 승인 없이 임의로 수사 계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 또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15개 사건으로 정하여 역대 최대 규모였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수사 인력은 최대 105명이었는데,
- 이 특별검사 법률안의 수사대상은 6개 사건에 불과한데도 수사인력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최대 104명으로 규정하여 수사인력이 지나치게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 그리고 이 특별검사 법률안과 동일하게 군 관련 사건인 「공군 20 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수사 인력이 최대 85명이었고, 상설 특별검사 제도로써 국회의 의결 등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 관한 법률」의 경우 수사 인력을 최대 68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이와 비교해 이 특별검사 법률안에 따른 수사 인력은 최대 104명으로 과도하다는 점에서 과잉수사로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 나아가, 역대 최장인 수사 기간, 과도한 수사 인력 등에 비추어 특별 검사를 하는 데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 자명합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약 76억 원으로 추산하지만 통상 추산보다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사건 관련자들의 일부 혐의라도 기소할 경우 그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은 더욱 커져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가 막대한 액수에 이를 것이 분명합니다.

8.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특별검사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은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여, 추후 탄핵·해임건의·징계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해당 규정의 금지행위인 ‘방해 또는 지장을 주는 행위’의

의미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가령 정당한 사유로 출석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이 특별검사 법률안 제9조에 따라 적법 · 정당하게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하는 행위, 예산 · 인력 등 행정적 지원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불응하는 행위 등도 모두 이러한 수사 방해나 지장을 주는 행위로 부당하게 주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 또한, 수사방해 금지와 회피 의무의 주체로 규정된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수사대상이 되는’의 기준이 입건 여부를 의미하는 것인지 등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회피 의무의 요건인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역시 그 의미가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회피 관련한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범자가 이 규정의 적용 범위 등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 결국, 위와 같이 이 규정은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한 바,
 -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악용하여, 그 위반을 근거로 탄핵 · 해임건의 · 징계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9. 결 론

- 이와 같이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1) 국회 내 심도 있는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였고, (2)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덧붙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됨과 동시에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3)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4) 경찰의 1차 수사 후 검찰의 추가 수사가 예정되어 있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 나아가 (5) 특별검사에게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현행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6)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의 실시간 언론브리핑을 통해 특별검사 제도가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남용되어 수사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크고, (7) 과도한 인력 및 기간에 따른 과잉수사로 인해 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상당하며, (8) 수사대상 공직자의 특별검사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은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여, 추후 탄핵, 해임건의, 징계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기도 하지만, ① 위헌적 법률, ② 집행불가능한 법률, ③ 국익에 반하는 법률, ④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의 경우에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야만 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입법부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입법부가 때로는 다른 부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성향에 현혹될 수 있다는 점, 당파성은 가끔 입법부의 숙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의요구권은 성급함이나 부주의, 또는 나쁜 의도로 인한 악법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한 제도라는 가치가 있습니다.¹²⁾
- 즉,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통해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이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

12) 미국의 경우, 헌법 제정 당시부터 입법부의 오류 가능성, 집행권에 의한 입법부의 견제 필요성 등에 따라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로서 재의요구권을 규정하고 재의결시 상원과 하원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안이 확정되도록 하여 우리 헌법상 재의요구권 보다 더욱 강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미국 건국 이후 현재까지 재의요구권 총 2576회 행사). 또한, 유럽의 경우에도 법률안의 ‘일부’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가 가능(프랑스)하거나 재의요구시 실무상 법안을 수정 재발의하거나 법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후속 절차가 진행(독일) 되는 등 재의요구권 행사에 매우 강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이 특별검사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별첨]

법률 제 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정한다.

1.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2. 제1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대상에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군인권보호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한다)
3. 제2호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
4.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5. 제4호와 관련하여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6.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총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

명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이 제4항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공소유지의 경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한다)
2.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6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1조에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제12조에 따라 언론브리핑의 대상이 되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

여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의 연장된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검사등은 제11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후

단을,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7조제6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7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②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9조(이의신청)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

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조(벌칙) ①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7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